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가단504169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기흥

변론 종결2018. 5. 1.

판결 선고2018. 5.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35,412원과 그 중 90,290,511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3. 6.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기흥 사이에 2016. 3. 3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19,520,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기흥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중 119,520,900원에 대한 배당금출금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9.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중소기업자금대출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4. 9. 26., 보증원금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4. 9. 23. 보증기한을 2015. 9. 25.까지, 2015. 9. 23. 보증기한을 2016. 9. 23.까지로 각 연장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는 2013. 9. 27. 위 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 길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6. 9. 9.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은행은 같은 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7. 소외 은행에 90,290,511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3)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 당해 채무자로부터 원고가 징수하는 위약금은 합계 332,700원,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612,201원이다.

4)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11. 17.부터 연 10%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피고 주식회사 기흥(이하 '피고 기흥'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기흥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31. 접수 제63809호로 채권최고액 348,897,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12. 12. 피고 기흥이 근저당권자로서 140,005,382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한편 원고는 2017. 9. 13. 이 사건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기흥,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1459)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8.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6, 9 내지 11, 13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35,412원(대위변제금 잔액 90,290,511원 + 위약금 332,700원 + 채권보전비용 612,201원)과 대위변제금 90,290,511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기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과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3. 31.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피고 B의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B이 피고 기흥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개월여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점, ③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A는 2015년경 부채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까지 계속하여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었으며 결국 2016. 9. 9.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④ 피고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5. 7.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15,000,000원을, E으로부터 75,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⑤ 피고 B은 2016. 3.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465,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480,000,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채권자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본소), 47113(병합), 47120(반소)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78,000,000원의 근저당권과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1개월 정도 경과한 2017.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C)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기흥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기흥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 기흥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기흥은 2015. 2. 16. 피고 A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바, 당시 원고와 피고 A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거나 피고 A와 피고 B의 재정이 악화된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기흥은 피고 A와 계속적인 거래를 해오던 중 2015. 2. 16. 피고 A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외상대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기흥은 피고 A가 위 약정에 따른 상환계획을 지키지 못하자 2016.

2. 19.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피고 기흥과 피고 A는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주재하에 2016. 3. 31.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48,296,885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A가 원금을 분할상환하며 피고 기흥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채무자인 피고 A와 대표이사 피고 B과 피고 기흥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기흥이 제출한 을다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기흥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기흥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기흥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체의 회복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등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 등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등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7525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기흥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 주식회사 삼성카드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한 점에서 피고 기흥의 배당금채권이 피고 B에게 환원될 경우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바,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과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채권액 합계 119,520,900(=109,577,990+9,942,910)원의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19,520,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기흥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 중 119,520,9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배당금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정

별지